

오렌지라이프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

(개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用-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제외)

※ 개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주식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의 0.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관계는 조세조약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세액 및 납세 절차 등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 (1) 오렌지라이프 주식과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를,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1주당 가액(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교환가격인 1주당 43,336원, 외국법인의 경우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1주당 주식교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과 주식교환으로 취득하는 신한금융지주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단주대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3)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양도차익의 22%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이 한국 내에서 소득세(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또는 법인세(외국법인의 경우)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4) 한국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

급을 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1)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을 통해서 오렌지라이프 주식을 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임대리인 또는 신한금융지주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나, 상임대리인과 협의하여 상임대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2) 만약 주주가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오렌지라이프 주식을 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5)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상임대리인, 증권사 또는 신한금융지주 등)에게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 (1) 오렌지라이프 주식과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가액의 0.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주당 양도가액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격으로서, 오렌지라이프 주식 최종거래일인 2020년 1월 21일 종가 적용)을 의미합니다.
- (2)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임대리인 또는 신한금융지주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 (3) 만약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오렌지라이프 주식을 교환(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 (1) 오렌지라이프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를,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주당 양도가액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오렌지라이프로부터 지급받는 오렌지라이프 주식 1주당 가액(오렌지라이프가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가액은 1주당 28,235원)입니다.
- (3)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양도차익의 22%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이 한국 내에서 소득세(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또는 법인세(외국법인의 경우)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4) 한국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1)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을 통해서 오렌지라이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임대리인 또는 오렌지라이프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나, 상임대리인과 협의하여 상임대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하

고 있습니다.

2) 만약 주주가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오렌지라이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개인 및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상임대리인, 증권사 또는 오렌지라이프 등)에게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1) 오렌지라이프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위 제1항 참조)의 0.5%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2)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임대리인 또는 오렌지라이프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3) 만약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오렌지라이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III. 유의사항

1.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 바,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82-2-2200-8944(오렌지라이프 IR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